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726
----------	-------

발의연월일 : 2025. 10. 27.

발 의 자 : 손명수 · 안태준 · 이성운
이해민 · 황명선 · 허성무
조계원 · 염태영 · 송기현
복기왕 · 민홍철 · 홍기원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철도 및 자가용 확산 등에 따른 버스 이용 감소로 버스의 운행수입이 원가에 미달하여 버스사업자 독자적으로는 안정적인 버스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에서 2004년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지자체는 버스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버스사업자의 운행 손실을 보전하는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음.

버스 준공영제는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버스기사 처우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지원금 지출과 지자체가 버스사업자의 운행 손실을 보전함에 따른 버스사업자의 운영 효율성 저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모펀드가 준공영제 대상 버스사업에 진출함에 따라 과도한 배당과 자산 매각 등에 따른 버스산업의 공공성 저하에 대한 우려도 존재함.

그간 지자체는 조례와 버스사업자와 체결한 준공영제 협약 등을 통해 버스 준공영제를 개별적으로 운행하여 왔으나, 준공영제가 법제화되지 않아 지자체가 준공영제 대상 버스사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지자체별 준공영제 운영 효율성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법에 버스 준공영제를 규정하고, 관할관청이 버스사업자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가 미흡하거나 버스사업자가 관할관청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버스사업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조금을 미지급·환수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한 표준 운영지침을 고시하는 한편, 관할관청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버스 준공영제의 운영을 위해 준공영제 재정 지원 대상이 되는 차량의 대수나 종류의 조정을 버스사업자에게 요구하거나 버스사업자가 경영건전성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버스사업자에게 이익 배당의 제한 등 경영 개선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 및 안 제21조의 2 신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준공영제”(이하 “준공영제”라 한다)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운송사업자(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53조에 따라 설립한 운송사업자 조합과 협약을 체결하고 제50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을 “중”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준공영제 관리·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영제 대상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

영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50조에 따른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제51조제3항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2.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제50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 협약안, 표준 원가 산정 및 정산 기준 등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한 표준 운영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영제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원활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준공영제 대상 운송사업자와 협의한 후 제50조에 따른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되는 차량의 대수나 종류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영제 대상 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준공영제 대상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자본금 등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상태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준공영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에 따라 시행하는 준공영제 및 공공관리제 등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2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운영비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는 이 법에 따른 준공영제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7. (현행과 같음) 10. “ <u>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준공영제</u> ”(이하 “ <u>준공영제</u> ”라 한다)란 <u>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운송사업자(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53조에 따라 설립한 운송사업자 조합과 협약을 체결하고 제50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u>
제4조(면허 등) ① ~ ③ (생 략)	제4조(면허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운송사업자(제1항에 따라</u> <u>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u> <u>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u> <u>이하 같다) 중</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항에 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시설 (이하 “주요교통시설”이라 한 다)이 같은 항에 따라 정하여 진 사업구역(이하 “소속 사업 구역”이라 한다)과 인접(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한 정한다)하고 소속 사업구역에 서 승차한 여객을 그 주요교통 시설에 하차시킨 경우에는 제5 항에 따른 승차대를 이용하여 소속 사업구역으로 가는 여객 을 운송할 수 있다. 1. ~ 4. (생략) ⑤ (생략) <u><신설></u>	④ -----<u>중</u>----- -----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u>제21조의2(준공영제 관리·감독)</u> ① <u>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u> <u>자치단체의 장은 준공영제 대</u> <u>상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u>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u> <u>국토교통부령 또는 조례로 정</u>
---	--

하는 바에 따라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50조에 따른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제51조제3항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2.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제50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 협약안, 표준 원가 산정 및 정산기준 등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한 표준 운영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영제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원활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준공영제 대상 운송사업자와 협의한 후 제50조에 따른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되는 차량의 대수나 종류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영제 대상 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준공영제 대상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자본금 등의 증액, 이익 배당의 제한 등 경영상태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